

일본 국내! 교통안전! 매뉴얼

운전자 수칙

☞자동차 운전시에는 항상 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
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일본에 상륙한지 1년이내이며 발급된 날부터 1년간 유효입니다!! 이 →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.

상기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일본에서 출국했다가 3개월미만 기간에 일본에 상륙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.

☞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직전에서 꼭 정지를 해야 하고 좌우로 도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주행해야 합니다.

또 교차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

☞교차로 안에서 우회전하실 때에는 이미 도로 중앙선 쪽으로 가서 중심부분의 안쪽을 서행하면서 통행하십시오.

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.

☞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.

또 감기약이나 두통약 등을 먹었을 때에도 운전하지 맙시다.

☞자동차 운전시에는 꼭 안전띠를 매고 운전해야 하고 동승자도 또한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.

☞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,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.

그외에 부상자가 없는 사고도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(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) 경찰신고 전화번호는 110번입니다.

보행자와 자전거편

☞보행자는 인도를 걸어갑니다.

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을 걸어갑니다.

자전거는 인도의 왼쪽부분을 통행합니다.

다만 ‘자전거보도 통행가능(轟鋸車歩鑱 鑿脏鼻)’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도쪽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.

☞^ㄴ 일시정지.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십시오.

또 복잡한 교차로나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안전확인을 합니다.

☞자전거가 신호등 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에는 파랑등이 되면 교차로를 건너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앞에 있는 신호등이 파랑등이 된 후, 건너갑니다.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후방 안전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합니다.

☞보행자는 ‘보행자용 신호등.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

각종 교통표지판

			
일시정지	최고속도	주차금지	주정차금지
			
일방통행	지정방향의 진행금지	차량진입금지	앞지르기를 위해 우측부분 차선 침입 통행금지